

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

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

-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**
 - 신청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 (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 (일부위탁 포함) 하는 농지)
 - * 일부위탁: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,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
 - 임차한 농지(임대차 계약서 첨부)
 - 2021년부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제출
-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지**
 - 본인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
 - 농작업 전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농지
 - 폐경 농지
 - 건축물, 주차장, 콘크리트 도로, 묘지 등으로 영농행위 불가능 농지
- 직불수령자 정보공개**
 - 장소: 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
 - 공개내용: 성명, 농지등의 지번, 등록면적, 직불금 종류, 수령금액
- 부정신청·수령자 신고**
 - 접수기간: 콜센터(1644-8778), 읍·면·동 사무소, 농관원 지원·사무소
 - 포상금 지급: 최소 지급금액 50만원
- 직불금을 부정신청·수령한 경우**
 - 예)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
 - 부정수급 농지를 포함하여 소유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, 부정수급 수령액의 5배 제재부가금이 징수되고 향후 5~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.
 - 경작하지 않음을 알고도 '경작사실확인서'를 거짓으로 증명하는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- * 형사처벌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**
 - 집합교육: 읍·면·동별 연 2시간(코로나19를 감안하여 추후 안내)
 - 온라인교육: 농업교육포털(www.agriedu.net)에서 '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' 수강
 - * 신청 전년도 10월 1일부터 교육이수가 인정됩니다.

※ 공익직불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(www.mafra.go.kr/gong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 공동체 유지,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. 그동안 쌀 직불금, 밭 직불금,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,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'기본형공익직불제'로 통합해서 신청하면 된다. 친환경직불, 경과보존직불,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.

2021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·접수는 3~4월에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.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.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요건,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. 또 소농직불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,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게 된다.

관련 정보는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전용 페이지(https://www.mafra.go.kr/gong)를 참조하고, 기타 문의는 각 읍·면·동 및 농관원 콜센터(1644-8778)로 연락하면 된다. 추가 자료는 공익직불제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유튜브 공익직불제 따라잡기, 공익직불제 신청

따라잡기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.

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▲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(남에게 임대준 농지 제외), 경작하는 농지 중 '폐경 면적'은 신청 시부터 본인이 인지하고 신청하지 않을 것(신청 단계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면적까지 신청할 경우, 2021년 직불금 총액의 10%가 감액될 수 있음) ▲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신청(2020년에 임대차계약서 대신 '확인서'를 제출한 농업인은 올해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보완·제출) ▲ 농지 임대차 관

계, 소유자, 재배품목 등의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에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,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 직불금 총액의 10%가 감액될 수 있다. 올해는 미리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스스로 점검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고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. 기타 정보는 필요한 경우 공익직불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또 농업교육포털(www.agriedu.net)에서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, 사이트에서 수강 시 자동으로 2021년 공익직불제 교육 이력이 기록된다. ▼



2021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

01
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



02
경작중인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



* 폐경 면적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% 감액됩니다.

03
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하기



* '20년 임대차 계약서 대신 '확인서'를 제출하신 경우 '21년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04
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



*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%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는 신청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로 문의하시고, 농업경영체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(1644-8778), 인터넷(www.agrix.go.kr)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.